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087호(號) 1933(昭和 8)년 12월 22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635호(號)

1933(昭和 8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78호(號)(조선내 철도·궤도 및 항로 간 화물연대운송규칙[朝鮮內鐵道·軌道及航路間貨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1934(昭和 9)년 1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12월 22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1조(條)제2항(項) 별표(別表) 중(中) (4)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(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)의 항(項) 특종취급사항란(特種取扱事項欄)을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금강(金剛)의 소정(所定)에 의(依)해 발착역(發著驛)에서 차급화물(車扱貨物)의 적사[積卸]를 대변(代辦)함.